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모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손해배상 금액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84조의2에 규정된 금액에 미치지 않았던 내용을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,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지역의 부지활용 효율성을 고려, 종전에는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2층이하에 설치해야했던 것을 앞으로는 화재 시 대피 안전기준 충족 시 층수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의견 조회 예정 (2023. 6월)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6. ~ 7월) 예정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5 제1항제2호 가목 중 “1억원의”를 “1.5억원의”로 한다.

같은 호 나목 중 “2천만원의”를 “3천만원의”로 한다.

같은 호 다목 중 “1억원의”를 “1.5억원의”로 한다.

별표 2의2의 제1호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.

같은 표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 또는 구 또는 특별자치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경우,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“가”목과 “나”목의 전단 중 “2층 이하에 설치”를 “5층 이하에 설치”로 할 수 있다.

- 1) 2개 이상의 출입구와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피난계단 또는 계단 외 피난로 확보
- 2) 영유아실은 임산부실의 최하층의 동층 또는 하층에 설치
- 3)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피난층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른 노대등, 연결통로, 대피공간을 설치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책임보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입기간까지 가입금액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제3조(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·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별표 2의2 제1호다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의5(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) ①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(이하 “책임보험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	제17조의5(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책임보험 가입금액	2. -----
가.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: 이 용자 1명당 <u>1억원의</u> 범위 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 급할 수 있을 것. 다만,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 다.	가. ----- ----- <u>1.5억원의</u> ----- ----- -----.
나. 이용자가 감염되거나 부 상당한 경우: 이용자 1명당 <u>2천만원의</u> 범위에서 발생 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 을 것	나. ----- ----- <u>3천만원의</u> ----- ----- -----
다. 이용자가 감염 또는 부상 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	다. ----- ----- ----- -----

상태에서 그 감염 또는 부상 상이 원인이 된 신체의 장애 (이하 “후유장애”라 한다)가 생긴 경우: 이용자 1명당 <u>1억원의</u>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②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1.5억원의</u>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397